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1
----------	-----

2011년 2월 2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11월17일 김용석(金勇錫)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1년 2월 24일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용석(金勇錫) 의원)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시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 현행 조례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 이외에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검토요지

○ 본 안건은 동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감사·조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허가 외에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게 하고자 제안되었음.

- 현행 행정사무감사·조사는 회의진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 및 조사의 장소와 시간은 감사 또는 조사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다만, 감사·조사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주간 40시간, 1일 9시부터 18시로 그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 바, 그 외 시간에 감사·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서로서 해당 위원회가 의장에게 감사·조사의 연장허가를 요청하고, 이를 접수한 의장은 연장사유를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허가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동 조례 제4조의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은 **국회를 비롯한 16개 광역의회 중 서울특별시의회에만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상 피감사·조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균형 있는 직장생활과 복무환경의 배려를 통해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발의된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조사활동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은 감사·조사 중에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감사·조사 과정에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조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은 물론, 감사·조사 실시 도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원활하고 신속적인 감사·조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감사·조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감사·조사의 주체인 위원회가 즉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근무시간 외에 감사·조사 활동의 실시여부에 대해 의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감사·조사 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감사·조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신속히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본 조항의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1991.8.24)된 당시 ‘공무원복무규정’으로 되어있었으나, 기존 ‘공무원복무규정’은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구별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내용 중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의 수정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9명)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1
----------	-----------

제안연월일 : 2011. 2. 24.

제안자 : 운 영 위 원 장

1. 수정이유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감사 및 조사 실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감사·조사 활동의 시간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나. 예산조치
- 다.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감사·조사 활동) 감사· 조사의 활동은 공무원복무규 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u>허가한 경우에는</u> 그 러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감사·조사 활동) 감사· 조사의 활동은 <u>허가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u></p>	<p><u>〈삭제〉</u></p>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감사·조사 활동) 감사·조사의 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삭제></u></p>